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190호)

2024.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피한정후건인 결격조항 정비 ..... | 3 |



## I. 개요

### 1. 정부안(의안번호 제2190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4.
- (3) 회 부 일 : 2024. 7. 25.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br>1. (생략)<br>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br>3. ~ 6. (생략) | 제25조(결격사유)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u>피성년후견인</u><br>3. ~ 6.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공포한 날                                                                                                                     |                                                                                                     |

#### 나.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sup>1)</sup>에서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

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 이러한 성년후견제로의 개편은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임.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 비교 >

| 성년후견제 도입 전                                                                                | 성년후견제 도입 후                                                                                                                    |
|-------------------------------------------------------------------------------------------|-------------------------------------------------------------------------------------------------------------------------------|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br>(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b>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b> 사람<br>(행위능력) <b>원칙적</b>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
|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br>(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b>모든 법률행위에</b> 후견인 동의 필요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b>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b> 사람<br>(행위능력) 가정법원이 <b>별도로 정한 행위만</b> 후견인 동의 필요                      |

- 그러나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이후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여 정비(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를 결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검증 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와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  
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바, i) 직무수행능력  
의 사전검증이 가능한지, ii) 심신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적인 해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직무의 성격) “동물실험”이란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과학적 절차로<sup>2)</sup>,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  
설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 공중보건에 광범위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현행  
법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sup>3)</sup>.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  
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제13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재해 방지)**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  
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실험시설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두지 않는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더라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자격요건 >**

| 구 분  | 동물실험시설                                                                                                                                                                                                                                                                                                                |                                                                                            | 실험동물공급자 |
|------|-----------------------------------------------------------------------------------------------------------------------------------------------------------------------------------------------------------------------------------------------------------------------------------------------------------------------|--------------------------------------------------------------------------------------------|---------|
|      | 운영자                                                                                                                                                                                                                                                                                                                   | 관리자                                                                                        |         |
| 결격사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      | 1.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됨)<br>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br>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br>6.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자격요건 | 없음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br>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없음      |
|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br>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 |         |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먼저, 현행법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현행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4)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동물실험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감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24조5)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현행법상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식약처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동물실험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는 식약처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춘 것

#### 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7.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다음으로, 현행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6)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의 사전적인 검증 절차를 갖춘 것으로 생각됨.

다만, 동물실험시설 관리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관리자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 제24조제1항제5호7)에 따라 해당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임.

□ (실험동물공급자)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실험동물

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 7)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는 동물실험시설 등록을 위한 인적 요건이므로, 관리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해당 시설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식약처의 지도·감독을 통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에는 해당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1조(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로 등록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공급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8)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의 안전성과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감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16조9)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는 식약처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현행법 제24조10)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가 현행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도·감독

#### 8)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유지 또는 연구 과정 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 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12조에 따라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정 등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동물실험시설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7.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식약처장이 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직무수행능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
|--------------|
| 문 의 처        |
| 02)6788-5504 |

|              |                              |
|--------------|------------------------------|
| <b>【참고1】</b> | <b>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사례</b> |
|--------------|------------------------------|

| <b>소관<br/>부처</b> | <b>법률명</b>                       | <b>대상</b>                 |
|------------------|----------------------------------|---------------------------|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             |
|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임원     |
|                  |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
|                  | 전자서명법                            | 공인인증기관 임원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 원자력안전<br>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 발전용 원자로/관계시설 건설허가 등       |
| 외교부              | 재외동포재단법                          | 재외동포재단 임원                 |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
|                  |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알선업 임원                |
| 법무부              | 법무사법                             | 법무사 사무원                   |
|                  | 변호사법                             | 변호사 사무직원                  |
|                  | 변호사시험법                           | 변호사시험 응시                  |
|                  | 비송사건절차법                          | 청산인 선임                    |
|                  | 정부법무공단법                          | 정부법무공단 임원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관리위원회 위원의                 |
| 경찰청              | 경비업법                             | 경비업 법인 임원 및 경비지도사,<br>경비원 |
| 인사혁신처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임용                  |
| 행정안전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계측업 등록 등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제조업/유지관리업 등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br>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사업 등록                 |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br>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         |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                  |
|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 탱크시험자 등록 등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
|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교육사                   |

| 소관<br>부처      | 법률명                    | 대상                   |
|---------------|------------------------|----------------------|
| 문화체육<br>관광부   | 경륜·경정법                 | 선수출전/심판종사 등록         |
|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지도자                |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교육사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        |
|               | 저작권법                   |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
| 문화재청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      |
|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매매업자 허가           |
| 공정거래<br>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거래사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임원              |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거부 사유 등 |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광고판매대행자 대표자          |
| 과학기술<br>정보통신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등         |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직원 임용           |

|              |                                      |
|--------------|--------------------------------------|
| <b>【참고2】</b> | <b>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존치한 사례(국가전문자격)</b> |
|--------------|--------------------------------------|

| 연번 | 법률명                      | 대상       |
|----|--------------------------|----------|
|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가맹거래사    |
| 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감정평가사    |
| 3  |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 감정사      |
| 4  |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 검량사      |
| 5  |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 검수사      |
| 6  | 경비업법 제10조                | 경비지도사    |
| 7  | 공인노무사법 제4조               | 공인노무사    |
| 8  | 관광진흥법 제7조                | 관광통역안내사  |
| 9  | 관광진흥법 제7조                | 호텔경영사    |
| 10 | 관광진흥법 제7조                | 호텔관리사    |
| 11 | 관광진흥법 제7조                | 호텔서비스사   |
| 12 | 관광진흥법 제7조                | 국내여행안내사  |
| 13 | 관세사법 제5조                 | 관세사      |
| 1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문화재수리기술자 |
| 15 | 변리사법 제4조                 | 변리사      |
| 16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 사회복지사 1급 |
| 17 | 세무사법 제4조                 | 세무사      |
| 18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 주택관리사보   |
| 19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 청소년상담사   |
| 20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 청소년지도사   |
| 21 | 행정사법 제6조                 | 행정사      |

|              |                                  |
|--------------|----------------------------------|
| <b>【참고2】</b> | <b>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존치한 사례(기타)</b> |
|--------------|----------------------------------|

| 연번 | 법률명                     | 대상                        |
|----|-------------------------|---------------------------|
| 1  | 변호사법                    | 변호사                       |
| 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br>시설 종사자 |
| 3  | 간선급행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운송사업 면허                   |
| 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운영·종사               |
| 5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
| 6  | 군인사법                    |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
| 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지정                 |
| 8  | 수의사법                    | 수의사                       |
| 9  |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보미                     |
| 10 | 약사법                     | 약사면허, 한약사면허               |
| 11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
| 12 | 유아교육법                   | 유치원 설립·운영                 |
| 13 | 의료법                     | 의료인                       |
| 14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활동지원인력                    |
| 15 |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
| 16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지도사                    |
| 17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별법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18 |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 19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사회서비스 제공자                 |
| 20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수련시설의 대표자                 |
| 21 | 직업안정법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
| 22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
| 23 | 관세법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
| 24 |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진단기관                  |